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51

발의연월일: 2025. 4. 18.

발 의 자: 박성민·구자근·강선영

김대식 • 박준태 • 이헌승

최보윤 • 서일준 • 박성훈

엄태영 · 김기현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(黨籍)을 가질 수 없고,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으로복귀함.

그런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성에 지장을 줄수밖에 없음에도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·

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의 제목 중 "당적 보유 금지"를 "의무 및 탄핵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의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국회는 의장이 제1항 본문에 따른 당적 이탈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의장의 <u>당적 보유 금</u>	제20조의2(의장의 <u>의무 및 탄핵</u> )
<u>지</u> ) 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의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
	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
	<u>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④ 국회는 의장이 제1항 본문
	에 따른 당적 이탈을 하지 아
	<u>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정치적</u>
	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
	는 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
	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
	<u>수 있다.</u>